

대기업 구조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1. 구조조정은 시급한 과제

요즘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경제위기란 단어가 귀에 익숙해진지 오래다. 작년말 겨울과 함께 몰아닥친 IMF한파가 봄이 와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주

가와 환율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업과 물가 등 생활과 직결된 경제문제는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경제가 언제쯤 좋아질 것 같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다.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경제가 회복되는 데에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딱 잘라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시스템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도 결국 기업과 금융을 포함한 경제의 구조조정이 얼마나 신속히 그리고 철저히 추진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2. 대기업,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경제가 IMF관리체제로 추락하게 된 배경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작년 초부터 계속된 대기업집단의 부도사태가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대외신인도 하락을 초래하고 이것이 다시 금융·외환위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기업집단의 연쇄부도사태는 왜 발

생하게 되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대기업 집단의 비효율적인 구조와 이를 배태시킨 취약한 기업환경에 근본원인이 있다.

우선 대부분의 기업집단이 동일인과 그 가족이 소유·지배하는 전근대적인 오너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룹총수와 기초실은 막강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들의 부실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상호채무보증, 출자, 내부거래 등을 통해 선단식 경영을 함으로써 계열기업의 독립경영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상호채무보증의 경우 무리한 계열확장의 수단이 될뿐만 아니라 일부 계열사의 부실을 기업집단 전체로 확산시키고 한 개의 부실계열사 조차 정리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도한 외부차입에 의존하여 부분별하게 계열사와 영위업종을 확대시킨 결과 기업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재무구조도 극도로 취약한 상태이다.

한편 이러한 비효율적인 기업구조는 은행, 자본시장 등 금융환경이 낙후되고 기업경영이 투명하지 못하여 부실경영에 대한 내·외부적인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에 따라 IMF에서도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경제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하면서 특히 기업부문에 대하여는 재무구조 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및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확대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문하고 있다.

3. 구조조정은 기업 스스로

정부는 IMF체제 출범 이후 대기업들이 스스

로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혁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우선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10개의 법률을 지난 2월 14일 개정하였다.

첫째, 출자총액제한 등 외부적 규제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관행은 조속히 해소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였다. 둘째,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결합재무제표제도를 앞당겨 도입하고 외부감사와 회계공시를 강화하도록 외부감사법을 개정하였다. 셋째, 부실경영에 대한 외부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허용하고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폐지하는 등 M&A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외국인투자법과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였다. 넷째,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되는 한계기업은 원활히 퇴출될 수 있도록 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 등 기업퇴출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관련절차와 담당기구를 효율화하였다. 다섯째,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등 세제를 개선하였다.

이와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소수주주권 강화, 경영자의 법적책임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금년 상반기 중 입법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여건만 조성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 기업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혁의지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제반여건을 조성한다면 구체적인 구조조정은 기업의 몫인 것이다.

4. 공정위의 역할

정부는 IMF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개혁의 기본방향으로 「민주적 시장경제」의 확립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와 병행을

통해 경제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자는 것이다.

일찍이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창시자인 발터 오이켄은 자유방임경제와 정부주도경제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면서 질서의 틀 속에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는 「자유경쟁적 시장제도」를 주창한 바 있다. 이를 위하여 통화가치의 안정과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의 개입은 오직 독과점규제를 통한 경쟁경제질서의 확립, 소득재분배, 그리고 시장실패의 교정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전후 독일경제의 부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이 사상은 현재의 우리 경제의 개혁방향 즉, 「민주적 시장경제」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될 것이다. 즉 대기업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하되 독과점 등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은 단호히 규제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정위는 우선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시장경제질서가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상호채무보증의 조기 해소를 감시·도려하고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독과점이 심화되지 않도록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은 적극 규제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우리 경제가 경쟁적 시장구조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과 경쟁제한적인 각종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오늘날의 기업환경은 과거와 같이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구축하는 규모의 경제시대가 아니다.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로 돌입한 것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GE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의 구조조정도 결국 기업 스스로 과거의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려는 철저한 개혁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본 협회, '98년도 정기회원총회 및 「기업 구조조정과 경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강연회 개최

본 협회는 협회의 정관 제13조에 의거한 1998년도 정기총회를 2월 27일(금)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원정기총회에서는 '9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 이양순 회장과 본 협회의 이사(대한상공회의소 김효성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 부회장, 현대 박세용 사장, 삼성 이학수 사장, 대우 김욱한 사장, LG 이문호 사장, SK 손길승 부회장) 및 감사(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이원호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황두연 부회장)를 연임시키고 신원인더스트리(백갑중 사장), 한국전장(김영수 회장), 보성중전기(임도수 회장) 등 중전기업의 대표 3인을 신임 이사로 선임하였다.

정기총회에 이어 개최한 강연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김용 사무처장이 「기업 구조조정과 경

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미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세법, 외국인투자법, 퇴출관련 법률 등 8개 관련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상법은 금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동 강연회 내용과 주요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 구조조정과 경쟁정책 추진방향

김 용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IMF관리 경제하에서 당면한 대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들과, 경쟁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집단은 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고 고도성장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했지만, 개방화·세계화라는 국제적인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동남아 여러 나라가 경제의 부실화와 과소비·과투자 등으로 외환위기를 맞아 많은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집단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계열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 집단들은 일단 차입을 하는데 상당히 용이한 형태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소유지분면에서 볼 때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등이 10% 미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열사를 통한 지분을 34.5%를 합하는 경우, 내부지분율이 44.5%에 달하기 때문에 동 집단 전체를 지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여 계열사를 많이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기업집단내 계열사의 영위업종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된 반면 외부차입에 의존한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이 30대 기업 집단 전체로 볼 때 약 400%에 달하게 되어 미국, 일본에 비하여 2배 수준에 이르는 취약한 재무구조로 경쟁력저하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기업의 비효율적인 구조는 연쇄 부도사태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국가 전체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금융·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되어 우리 경제가 IMF관리체제로 추락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국민의 과소비 행태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볼 때 투자의 주체이고 경제를 이끌어 온 대규모기업집단의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와 행태가 큰 원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개방화·세계화에 걸맞는 금융구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대규모기업집단이 과거의 고도성장하에서 유지해 오던 행태와 구조를 지속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IMF구제금융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재정·통화의 긴축을 통한 과소비·과투자를 억제하고 금융개혁 및 임금, 고용 등에 있어서의 탄력성

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대외 개방 확대 및 기업구조조정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외국인 주식소유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벌내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관행을 개선해야 하고,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일단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째, 경제력집중 억제제를 위하여 실시하였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IMF경제에서의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폐지하고, 둘째, 무리한 차입경영을 가능케 했던 상호지급보증관행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고, 셋째,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결합재무제표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외부감사제도와 회계공시제도를 강화토록 할 것입니다. 넷째, 기업들의 지배구조면에서 부실경영에 대한 내부감시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다섯째, 적대적 M&A를 허용함으로써 부실경영에 대한 외부견제기능을 강화하여 M&A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위하여 회회, 회사정리, 파산 등 기업퇴출 관련절차와 담당기구를 효율화하는 등 몇 가지의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 아래 기업 구조조정시책

을 마련하고 정부가 '98년 2월 14일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8개 관련법률(공정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은행법, 외국인투자법, 세법, 퇴출관련 법률 등. 단, 상법은 금년 상반기중 개정 예정)을 개정하여 의원입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개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여 적대적 M&A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유도하고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관행도 조기에 해소하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99회계년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조기 도입하고 외부감사인 선임시 반드시 채권자들도 포함되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을 의무화했습니다. 셋째,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에 있어서는 상장법인에 대해 소수주주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대표소송제기권의 행사요건을 현행 1%에서 0.05%로(증권거래법 개정) 낮추었습니다. 넷째, 그 동안 외국인투자법에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는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를 현행 10%에서 33%까지 확대하여 적대적 M&A를 허용하고,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인수시 재정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폐지하여 M&A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M&A와 관련하여 사업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부가세,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세제상의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퇴출관련제도의 개선면에서는 채무동결기간을 최장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등 절차진행을 신속화하였고, 회사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클 경우 정리절차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8년 2월

14일 법 개정시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개정 등을 통하여 추진중인데 누적투표제도 도입이라든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배주주와 기조실의 임원을 사실상 이사를 간주하는 법적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중입니다.

다음은 공정거래법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다각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최근 결합재무제표의 조기도입,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 허용 등의 추진으로 기업들이 무분별한 사업다각화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와 관련된 소유분산우량제도 등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열사간의 상호채무보증이 금지되는데, '93년 이 제도 도입당시는 채무보증한도가 자기자본의 200%이내였으나 '96년말 법 개정시에('97년 4월 1일) '98년 3월 31일까지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한도인하에 따른 한도초과분은 약 6조원에 달하는데 일단은 '98년 3월 31일까지 해소토록 1년간의 경과기간을 두었습니다. 계열사간의 채무보증은 무리한 차입경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무구조를 취약케 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게 되는데 특히, 적대적 M&A를 허용하더라도 사실상 채무보증을 통해 계열사들을 거미줄같이 얽어놓고 있어 계열사의 제3자 매각 등 구조조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IMF에서도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98년 4월 1일부터는 신규채무보증은 전면 금지하되 다만, 전면금지에 따른 업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합리화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거나

폐해가 없는 채무보증은 예외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존 채무보증의 기한연장을 위하여 재약정하는 경우에는 2000년 3월 31일까지는 신규 채무보증으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채무보증의 해소에 대해서는 일단은 2000년 3월 31일까지 모두 해소하기로 하고 다만, 해소 만료일 현재 기존 채무보증의 해소를 위한 피보증회사의 합병·매각·유상증자가 진행중이거나 피보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 화의,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으로서 해소시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은행감독원장이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해소시한의 연장을 인정하여 2001년 3월 31일까지 해소토록 유예기간을 1년 더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 이후부터 2000년중에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기존 기업집단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2001년 3월 31일까지 해소토록 유예기간을 1년 더 부여했으며, 2001년 이후 신규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해소 유예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간만 부여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위한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보다 투명하고 자유스럽고 공정한 경쟁, 즉 시장경제원리가 충실히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정책의 기본 방향이 될 것입니다. 우선 IMF사태를 계기로 외국인의 적대적 M&A 허용,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지배구조의 선진화, 금융개혁 등이 추진됨으로써 경제력

집중의 자율시정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나 출자규제는 법 공포시에 폐지되는 반면, 채무보증 해소, 결합채무제표 도입, 지배구조 선진화 등은 일정기간 후 효력이 발생하여 자율시정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계열확장이 재연되고 국내시장이 독과점화 되는 등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경쟁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구분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선 대기업집단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관행이 법정 기한내에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행위 근절을 위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적대적 M&A를 허용하는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당해 시장에서의 독과점이 심화되지 않도록 기업결합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업결합심사기준」고시도 곧 제정할 예정인데, 다만,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결합심사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가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쟁당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독과점이 고착화된 부문에 대한 경쟁촉진방안을 수립·추진하고, 독과점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제도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등 장기적으로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제한적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생산·수입·유통 등 단계별로 상존하는 각종 진입규제를 적극 철폐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자율화가 확대되어 가는 금융분야와 법적용이 미비했던 공공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을 강화하고, 59개 법령에 의해 공정거래법상 적용이 배제되는 72개 카르텔 유형에 대해 근거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폭 축소하고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인정조항도 축소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주회사 해금에 대해서는 경제력집중이 급속히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지배구조선진화, 채무보증해소 등 전제조건을 충족여부를 보아 2000년 이후에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토론 내용

질의 1 IMF경제하에서 우리 기업의 도산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데, 철강, 시멘트, 조선 등 장치산업이 도산하는 경우 국가 경제에 피해가 크므로 산업합리화 측면에서 불황카르텔을 인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운용해 줄 수 있는가?

또한 미국의 독금정책의 경우 효율이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 독과점이 되는 기업결합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정책의 배경은 미국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부실기업이 속출하는 경우에 이러한 기업결합을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도 허용해 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요즘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이 자율에 의하지 않고 정부개입에 의해 추진됨으로써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데 이

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응답 우리 공정거래법에서 불황과 산업합리화 카르텔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장기적인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설을 줄이거나 생산량을 조정해서 합리화시켜 새로운 산업으로 개편해 가는 것이 산업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 경기에 직면할 때마다 이를 허용하다보면 경제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산업합리화가 아닌 불황카르텔의 특성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또한 산업합리화와 어떤 관련이 있고, 외국의 기준은 어떤 형태 인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탄력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다. 기업결합을 허용함으로써 독과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산업에서 M&A 촉진 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효율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클 경우에는 허용을 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기업들의 M&A가 좀더 폭넓게 허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고시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등에 의해서 M&A가 촉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구조조정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개입하는 것이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중이다. 그러나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 스스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질의 2 공공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응답 공공사업자는 30대기업집단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공공사업자라도 일반기업과 같이 취급하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등 일반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질의 3 지금까지 위원회에서는 물가관리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작년 연말부터 물가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각종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첫째, 위원회에서는 물가관리를 위해서 품목별로 담당국이나 과를 지정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여러 과에서 중복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통일해주는 방안이 없는지, 둘째, 물가정책 담당부처인 재경부등 타부처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셋째, 물가관련 조사를 각종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하고 있는데 향후 재경부 산하에 있는 소비자보호원이 위원회 산하로 이관되는지의 여부와 이관된다면 언제쯤인가?

[응답] 첫째,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독점국이 중심되고, 일반사업자에 대한 담합같은 것은 공동행위과가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이면서 공동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독점국과 공동행위과 양쪽에 관여되는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품목중심이 아니라 기능별로 구분하는 내부 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 시정되리라 생각한다. 재경부등 타부처와의 업무협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공정거래법상의 물가관리는 사실상 한정되어 있으며 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출고조절, 가격 남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일반사업자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공동행위 등을 다루는 것이 핵심이 되고 있다. 재경부도 출고조절을 위한 매점매

석이라는 개념으로 물가안정법에 의해서 다루도록 되어 있어 양부처간에 중복될 소지가 있지만, 공정거래법은 일단 매점매석의 개념이 아니라 독과점적 지위의 남용여부만을 다루기 때문에 구분은 된다. 따라서 부처간에 보완관계는 있지만 충돌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원 관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조직 개편시 부처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볼 때는 궁극적으로 경쟁정책이 소비자의 후생증진으로 나타나고 재경부는 국가경제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쟁당국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며, 소비자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단체들과 서로 협조가 용이하도록 경쟁당국에 이관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학계와 단체들의 의견도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경쟁당국과 합쳐져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정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며, 이에 대해 재경부도 기본적으로는 이견이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재경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질의 4] '98년도 협회 활동 계획 중 공정거래 연구회와 공정거래연수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응답] 정부보조금을 축소하는 정책때문에 현재는 운영 형태로 지원할 수밖에 없으며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결합재무제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로 구성된 재무제표를 1개 회사 차원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열사끼리 통합해 단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로 만든 것. 연결재무제표는 작성 대상 기업의 범위가 작아 그룹 전체에 대한 재무상태나 경영성적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준으로 지배회사와 종속기업의 지분율만 감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 포함되

지 않지만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포함되지 않아 모든 계열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결합재무제표는 회사 대 회사의 출자지분 비율만으로 작성대상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준은 공정거래법상 같은 계열회사로 그룹 내 모든 회사를 포괄하게 된다.

1998년도 본 협회 실시 교육 안내

본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원으로 1998년도 공정거래관련 교육 및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대 상	일 정	대 상	일 정
시장지배적사업자	4월(2일)	표시·광고관련업체	8월(1일)
대규모기업집단	5월(1일)	국제계약관련업체	9월(1일)
모니터요원	5월(1일) 및 11월(1일)	사업자단체	9월(1일)
수도권순회교육	6월(2일)	세미나과정 (기업체 임직원 대상)	10월(2박3일)
하도급관련업체	7월(2일)	출판관련업체	11월(1일)

※ 상기의 교육 일정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협회의 공정거래교육에 대한 문의는 본 협회 기획부 ☎ 775-8870~2 / F. 775-8873)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회원사 소식

회원사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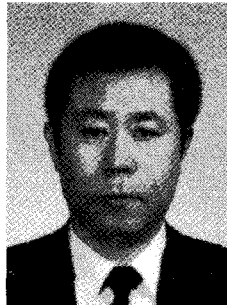
김 영 수
한국전장(주)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11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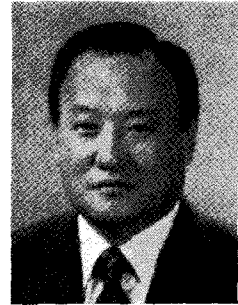
우 근 직
변호사

서울 종로구 내자동 223



이 상 운
(주)농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70



임 도 수
보성중전기(주)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731-2